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정시책 인력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인력 증원 분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510명 → 1,552명(+4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82명 → 1,524명(+4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변동없음)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정무직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 1,157명 → 1,200명(+43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0명(변동없음)
 - 5급 : 76명 → 77명(+1명)
 - 6급이하 : 1,070명 → 1,112명(+42명)
- 연구직 : 2명(변동없음)
- 지도직 : 33명(변동없음)
 - 지도관 : 3명(변동없음)
 - 지도사 : 30명(변동없음)
- 기능직 : 290명 → 289명(△1명)
- 별정직 : 27명(변동없음)

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현행	<u>78%이상</u>	<u>20%이내</u>	2%이내
조정	<u>79%이상</u>	<u>19%이내</u>	2%이내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u>3%이내</u>	<u>10%이내</u>	<u>16%이내</u>	33%이내	<u>38%이상</u>
조정	<u>4%이내</u>	<u>13%이내</u>	<u>19%이내</u>	33%이내	<u>31%이상</u>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510명”을 “1,552명”으로 하고, 제1호중 “1,482명”을 “1,524명”으로 한다.

제3조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 정직·정무직
비율	79%이상	19%이내	2%이내

제3조의 “별표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이내	13%이내	19%이내	33%이내	31%이상

제4조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52	1,552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00	1,200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7	27	3	4	4	12	27
6급이하계	1,112	1,112					
별정직 계	27	27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7	27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289	28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510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82명</u> 2. (생략) [별표1]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일반직</th><th>기능직·고용직</th><th>별정직·정무직</th></tr><tr><td>비율</td><td><u>78%이상</u></td><td><u>20%이내</u></td><td><u>2%이내</u></td></tr></table> [별표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2. 기능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h>10급</th></tr><tr><td>비율</td><td><u>3%이내</u></td><td><u>10%이내</u></td><td><u>16%이내</u></td><td><u>33%이내</u></td><td><u>38%이상</u></td></tr></table>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u>78%이상</u>	<u>20%이내</u>	<u>2%이내</u>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u>3%이내</u>	<u>10%이내</u>	<u>16%이내</u>	<u>33%이내</u>	<u>38%이상</u>	제2조(정원의 총수)<u>1,552명</u>..... 1. : <u>1,524명</u> 2. (현행과 같음) [별표1]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일반직</th><th>기능직·고용직</th><th>별정직·정무직</th></tr><tr><td>비율</td><td><u>79%이상</u></td><td><u>19%이내</u></td><td><u>2%이내</u></td></tr></table> [별표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2. 기능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h>10급</th></tr><tr><td>비율</td><td><u>4%이내</u></td><td><u>13%이내</u></td><td><u>19%이내</u></td><td><u>33%이내</u></td><td><u>31%이상</u></td></tr></table>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u>79%이상</u>	<u>19%이내</u>	<u>2%이내</u>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u>4%이내</u>	<u>13%이내</u>	<u>19%이내</u>	<u>33%이내</u>	<u>31%이상</u>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u>78%이상</u>	<u>20%이내</u>	<u>2%이내</u>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u>3%이내</u>	<u>10%이내</u>	<u>16%이내</u>	<u>33%이내</u>	<u>38%이상</u>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u>79%이상</u>	<u>19%이내</u>	<u>2%이내</u>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u>4%이내</u>	<u>13%이내</u>	<u>19%이내</u>	<u>33%이내</u>	<u>31%이상</u>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